

청약철회

1. 소비자는 다음의 사항과 날짜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- (1) 소매영수증을 받을 날로부터 14 일 이내
 - (2) 소매영수증을 받은 날짜보다 제품이 늦게 도착한 경우, 제품을 받을 날 또는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
 - (3) 만일 디스트리뷰터가 소매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거나, 디스트리뷰터의 주소 등 필요한 기타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소매영수증을 교부했거나, 또는 소매 영수증을 교부 받은 이후 엔에이치티케이(주)의 주소가 변경되어 상기 (1)번 또는 (2)번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게 된 날,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14 일 이내
2. 소비자는 디스트리뷰터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. 단, 디스트리뷰터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디스트리뷰터에게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대금환급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엔에이치티케이(주)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철회에 관한 통지는 서면으로(철회요청서 첨부)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.
3. 만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, 디스트리뷰터는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(영업일로 환산) 이미 지급 받은 제품을 환급하게 됩니다. 만약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.
4.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에이치티케이(주)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5. 위 4 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청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,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,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6. 아울러, 디스트리뷰터는 엔에이치티케이(주)로부터 구입한 제품 가운데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.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제품을 공급일로부터 1 월 경과 후 2 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품 대금의 5%, 2 월 경과 후 3 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품 대금의 7%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당해 디스트리뷰터에게 지급된 모든 수수료 및 후원수당, 당해 제품과 관련된 합리적인 공제 가능한 경비를 공제하고 재 구매하여 드립니다.
7. 디스트리뷰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.
 - (1) 엔에이치티케이(주)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
 - (2) 제품의 외관이 훼손되어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
 - (3)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8. 엔에이치티케이(주)는 제품의 일부가 이미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, 그 제품의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하여 디스트리뷰터가 얻은 이익이나 엔에이치티케이(주)가 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해당 디스트리뷰터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공식 홈페이지의 제품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9. 미성년자가 재화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